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Trial Broadcasting

김 대 성*
Kim, Dae-Seong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 |
| II. 재판중계방송의 법적 근거 | V. 맺음말 |
| III.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와
그에 대한 검토 | |

이 글은 하급심 형사재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범위, 방법 및 절차를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판의 중계방송이 헌법상 기본권 및 원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를 정리·검토한 후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주의나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은 헌법상 어떤 권리나 원칙의 구성요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법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적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법적·실제적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위의 우려들 중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필요는 있다. 한편, 모든 재판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어떤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중계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주제어] 형사재판 중계방송,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알 권리, 사법 신뢰

투고일 : 2017. 8. 31. / 심사회의일 : 2017. 9. 14. / 게재확정일 : 2017. 10. 11.

* 서남대학교 경찰경호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nd Security, Seonam University

I. 머리말

국가마다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판의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으로 보인다.¹⁾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중계방송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법정 밖에서 시청하는 것은 그리 익숙한 장면이 아니다. 헌법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와 공개재판의 원칙(제109조)을 규정하고 있고, -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으로 - 헌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형사소송법에서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조직법을 포함한 현행 법령은 재판의 중계방송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를 통해 재판이 중계방송된 것은 2004년 5월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장면(헌법재판소)이었고, 그 이후 TV나 인터넷을 통해 재판이 중계방송된 사례로 2013년 3월 베트남 국적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사건의 공개변론 장면(대법원),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선고 장면(헌법재판소), 2015년 6월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의 공개변론 장면(대법원), 2016년 6월 모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의 공개변론 장면(대법원), 2016년 9월 분묘기지권 사건의 공개변론 장면(대법원), 2017년 3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장면(헌법재판소) 등이 있었다. 그나마 지금까지 재판이 중계방송된 사례는 모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사건들이었고, 1심이나 항소심 재판이 중계방송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재판의 중계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전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된 것을 계기로, 대법원은 2017년 6월에 전국의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²⁾ 같은 해 8월에는 약간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재판중계방송의

1)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재판중계방송제도 및 현황에 대해서는 김재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발제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68-76쪽; 조규범,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13, 223-231쪽;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614-618쪽; 김소연,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63-272쪽; 계인국,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153-159쪽; 이균용, “법정에서의 사진촬영·녹음·방송: 법원조직법 제59조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시론”, 법조 제48권 제2호, 법조협회, 1999, 87-95쪽 등 참조.

2)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7.6.5.부터 6.9.까지 전국의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 중계방송에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하였다.³⁾ 그러나 같은 해 8월 23일에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의 보장⁴⁾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비교한 결과 중계방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각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⁵⁾

재판의 중계방송은 상충되는 양면의 가치를 지닌다. 그 한 면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의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들에 부합하고, 사법의 투명성 및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이익적 측면이고, 다른 한 면은 당사자, 피해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 소송관계자 및 기타 법정참석자들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이 여론의 부정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등의 피해적 측면이다. 따라서 재판의

관한 설문조사⁶⁾ 결과를 6.14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013명의 판사가 참여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87명(67.8%)은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는 데 찬성했다. 재판과정 일부의 중계에 찬성한 판사는 532명(52.5%)이었고, 전부의 중계에 찬성한 판사는 155명(15.3%)이었으며, 325명(32.0%)은 중계를 반대했다. 선고 공판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중계하자는 판사는 743명(73.3%)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판사는 254명(25.1%)이었다. 최종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의 중계를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판사는 284명(28.0%)이었고,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판사는 363명(35.8%)이었으며, 결심 공판의 중계에 반대하는 판사는 350명(34.6%)이었다. 재판의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하자는 판사는 696명(68.71%)이었다. (조선일보, “‘세기의 재판’이라는 ‘박근혜-이재용 재판’ 방송 생중계될까…판사 68%, 재판 중계방송에 긍정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4/2017061401890.html>, 검색일: 2017.8.1.)

- 3) 2017.8.4에 있었던 이 개정에서 변경된 조문은 이 규칙 제5조이다. 제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이 제1항으로 되고, 촬영, 중계방송 등의 범위가 규정된 제1항 제1호에서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변경되었으며, 제2항으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4) 뒤에서 검토하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불허하거나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불허 이유로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원칙인데, 특정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불허 이유로 들게 되면, 다른 형사사건들 모두에서도 이 원칙 때문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은 전면 불허 내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용 피고인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보장되는 것이고, 이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형사재판에서도 중계방송이 불허 내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 5) 연합뉴스, “법원, ‘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307084&oid=001&aid=0009493026&ptype=052>>, 검색일: 2017.8.24.

중계방송을 허용할 것인지, 만일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허용할 것인지 등은 위와 같은 재판의 중계방송이 지니는 양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검토·조율함으로써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재판중계방송의 양면가치의 상충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사건에서보다는 하급심의 사건 및 형사재판 사건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해당 사건의 사실문제보다는 순수한 법리문제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고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은 주로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하급심의 사건의 수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사건의 수보다 월등히 많으며, 민사재판 사건보다는 형사재판 사건에서 공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고 중계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하급심 형사재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범위, 방법 및 절차를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판의 중계방송이 헌법상 기본권 및 원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를 정리·검토한 후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판중계방송의 법적 근거

1.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현행 법규정

재판중계방송의 개념을 포함하는 재판의 공개⁶⁾는 헌법상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혹은 공개재판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의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설명된다.⁷⁾ 먼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3항 제2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6) 재판공개는 ① 법정의 심리를 공개하는 것(법정의 공개방청), ② 법정심리의 과정을 법정 외부에 공개하는 것(재판과정의 외부공개), ③ 법원의 공식기록인 재판기록이나 재판서를 공개하는 것(재판문서의 외부공개), ④ 재판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재판정보의 외부공개)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판중계방송은 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17-319쪽).

7) 이상원, 위의 논문, 319-320쪽; 강동욱,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발제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16쪽.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 하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⁸⁾ 다음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의 원칙(혹은 공개재판주의)’ 역시 앞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취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알 권리의 개념과 헌법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 가운데,⁹⁾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알 권리의 개념을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 그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로 파악하고 있다.¹⁰⁾ 위와 같이 헌법은 재판의 중계방송을 명시적 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큰 개념인 재판공개에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전술한 헌법상의 재판공개 규정을 재확인하거나 재판중계방송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우선, 헌법상의 재판공개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도 헌법상의 공개주의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중계방송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4조는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중계방송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8) 이상원, 위의 논문, 319-320쪽.

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배원,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쪽 이하 참조.

10)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원고와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아울러, 동 규칙 제5조는 재판장이 위의 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에는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로 한정할 것’, ‘법단 위에서 해서는 안 될 것’, ‘소란케 해서는 안 될 것’,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풀 상태에서 할 것’ 및 ‘소년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제한을 해야 하고(제1항),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중계방송 등의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¹¹⁾ 아울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7조의2¹²⁾는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TV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할 때, 하급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은 ‘공판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에만 허용되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인 공판 내지 사실심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공개주의와 재판중계방송의 관계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¹³⁾와 ‘공개재판의 원칙’(헌법 제109조)을 묶어서 ‘공개주의’라는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공개주의는 1808년 11월 16일

11) 이 규칙 제5조 제2항은 직전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재판과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한 것을 계기로 대법원이 2017.8.4.에 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항이다.

12) 이 규정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현행 규칙에 대법원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의 근거조항을 마련함과 아울러 방송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적 규정을 신설”한다는 취지에서 2013.2.28.의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이 신설 규정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은 2013.3.에 베트남 국적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사건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몇몇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을 TV 및 인터넷을 통해 실시해왔다.

13) 헌법 제27조 제3항의 명문은 ‘형사피고인’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재판이 요청되는 영역이 형사재판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 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9조와 통일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권리는 형사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해석된다(김소연, 앞의 논문, 252쪽; 계인국, 앞의 논문, 142쪽).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19조 제2항이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L'audience sera publique).”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역사적으로 중세와 근세에는 비밀재판(혹은 밀실재판) 및 규문재판이 횡행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강제,¹⁵⁾ 법관에 대한 권력자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상존하였다. 아울러, 국가권력에 종속적인 법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서 자유주의적 입헌국가에 합치되는 형사소송법의 제정도 시급히 요청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비밀재판과 규문재판을 철폐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 혁명의 산물 중 하나인 “개혁 형사소송법”으로써 공개주의를 입법한 것이다.¹⁶⁾ 이후 독일에서도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아 공개주의가 채택되는¹⁷⁾ 등 공개주의는 각국에서 법치주의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원래 공개주의에서의 ‘공개’는 일반 국민에게 법정에서 방문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적·추상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한다.¹⁸⁾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공개의 개념 혹은 공개주의의 범위를 이보다 훨씬 더 넓게 파악하는 입장이 유력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입장은 방송·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그 배경으로 하여, ‘간접공개’,¹⁹⁾ ‘매체공개주의’, ‘TV공개주의’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재판과정이 법원 밖으로 중계방송됨으로써 법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불특정의 일반 시민들에게 이를

14) 계인국, 위의 논문, 144쪽.

15) 특히 규문재판에서는 규문재판관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자백의 획득에 대한 강박감이나 유혹에 사로잡혀서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가혹행위를 자행하기가 쉬웠다(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201쪽).

16) 송희진, “형사재판에서의 공개주의”,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 연세법학연구회, 2000, 113-114쪽; 김재운,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301쪽; 박상기, 위의 책, 198쪽.

17) 19세기 초 독일에 대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입법적 영향에 대해서는 박상기, 위의 책, 201-207쪽 참조.

18) 김소연, 앞의 논문, 253-254쪽; 정문식, “재판방송의 헌법적 문제와 가능성 : 재판방송의 헌법적 정당성과 허용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48쪽; 조규범, 앞의 논문, 217-218쪽.

19) 공개재판은 ‘직접공개’와 ‘간접공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법정에서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체를 통한 중계방송 등을 하여 법정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정에서의 재판의 진행과정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강동욱,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0, 223쪽; 김재운,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299-300쪽; 정문식, 위의 논문, 145쪽).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까지도 공개의 개념 혹은 공개주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⁰⁾

역사적 과정에서 인정되는 공개주의의 취지는 i) ‘비밀재판의 배제를 통한 피고인의 이익 보호’, ii) ‘법관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영향 배제 및 법관의 독립성 보장’, iii)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iv)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대한 이바지’로 요약할 수 있다.²¹⁾ 재판의 중계방송이 이러한 공개주의의 취지의 실현에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공개주의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에 재판의 중계방송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개주의에 재판을 받는 사람이 본인의 재판을 중계방송해달라고 요청할 권리 또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방송 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비례성이나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법령은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기능 및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법원조직법 제59조 및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일정한 조건 하에 법정 안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실행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로 제한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²²⁾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의 공개주의 규정은 그 공개의 대상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 있다. 만일 헌법상 공개주의에 재판의 중계방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려면, 법원 조직법이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법령에서는 중계방송의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로 규정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에서도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개재판의 원칙의 내용에 재판의 중계방송을 포함시키는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재판기관의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주의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주의의 취지가 보다 잘 실현되고 그 취지의 실현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0) 이에 대해서는 김소연, 앞의 논문, 257-258쪽; 정문식, 위의 논문, 150쪽, 160쪽;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318-320쪽 참조.

21) 정문식, 위의 논문, 146쪽.

22) 그마저도 종전에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었던 것이 2017.8.4.에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로 변경된 것이다.

3.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방송의 관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와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알 권리의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다양하다.²³⁾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자유권적 성질로서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청구권적 성질로서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고 한다.²⁴⁾

재판의 중계방송이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재판의 중계방송은 법정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재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일 수 있다.²⁵⁾ 그러나 공개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의 중계방송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국민이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과 더불어 사법작용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의 중계방송은 사법작용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받지 아니함’과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알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유일한 것으로, 혹은 당위적인 것으로, 심지어 주요한 것으로

23) 그 외에도 알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보고 읽고 들을 권리, 즉 표현된 의사 등 정보를 받을 권리”, “표현된 의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의사형성 및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 “일반적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하여 얻을 수 있는 자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자유와 권리”, “의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김배원, 앞의 논문, 3-7쪽).

24)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 결정.

25) 김소연, 앞의 논문, 258쪽.

로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1년 평균 전체 재판사건이 1백 수십만 건, 그 중 형사재판이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은 건수의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하여 국민이 타인이 당사자인 재판을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할 권리 또는 국가가 국민 모두로 하여금 재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례성이나 적정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아울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도 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2조 제3호 가목 1)),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제2조 제1호), ‘공개’를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현행의 제도 및 실무에 있어서 재판은 녹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차 재판의 중계방송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이루거나 이 권리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더 잘 실현되고 그 실현범위가 확대되는 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III.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와 그에 대한 검토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 문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려된다. 이는 중계방송을 통해 형사재판의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피고인이 일반시민들에 의해 유죄자로 취급되거나 유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²⁶⁾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곧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위헌 여부로 이어지는

26)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19쪽; 김소연, 위의 논문, 259쪽.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는 검사의 입장과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나 무죄입증을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기 마련이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을 유죄자로 취급하거나 유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게다가, 무죄추정원칙의 취지 및 형사사법의 실무에 있어서 이 원칙의 준수가 직접적으로 요청되는 대상은 일반시민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등과 같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상대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아울러, 중계방송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상소가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역시 중계방송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의 위배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2. 법관의 판단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문제

형사재판이 일반국민에게 중계방송됨으로써 법관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 구체적인 우려사항으로 법관이 중계방송으로 인해 해당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으로써 그 사건의 실체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는 점, 사회적 비판이 두려워 법리에 따른 소신보다는 여론에 휩쓸리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 재판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사소한 트집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²⁷⁾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법원 및 법관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재판 및 사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들 우려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그저 직관적 추측일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²⁸⁾ 오히려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은 재판에 대한 일반시민

27)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0쪽; 김소연, 위의 논문, 260쪽; 정문식, 앞의 논문, 158쪽; 노재선,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43쪽.

28) 한동섭/김형일, “재판중계의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한양논총 제31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들의 감시와 비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정에 참석하는 법관, 검사, 변호인 등의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각자 본연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기도 한다.²⁹⁾ 그리고 재판에 관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만으로도 형성·변화·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나 법관의 판단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영향의 타을 재판중계방송으로만 돌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릴 정도로 얽매이는 것은 재판중계방송의 문제점으로 취급되기보다는 해당 법관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자격의 문제나, 법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울러, 법관이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해 형성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릴 정도가 아닌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법관이 형사재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이 법관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형사재판의 중계방송 덕분에 법관이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여지가 더욱 더 줄게 되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3. 법정참석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문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은 피고인, 피해자, 증인, 방청인 등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의 외모(특히 얼굴)나 개인정보 등을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³⁰⁾ 특히, 피해자나 증인의 경우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해 외모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면 보복범죄를 당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³¹⁾

이에 대한 반론은 피고인의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통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런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재판중계방송의 요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보다 중요한 공익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³²⁾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 2014, 61쪽.

29)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18쪽; 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1쪽.

30)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3-624쪽; 김소연, 앞의 논문, 259쪽.

31)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4쪽.

이 재판중계방송에 동의하더라도 대부분은 매스컴을 이용하여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그럴 것이고, 이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동의 요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재반론된다.³³⁾ 그러나 개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권리들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인정된다면 그 개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물며 유리한 판결의 획득 등 그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 개인이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동의를 자유로이 결정한 이상 그 결정의 의미나 효과는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계방송을 위한 촬영의 위치, 각도,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몇 십분 또는 몇 시간의 시차를 두는 지연중계방송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외모나 개인정보 등이 비공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도 범접참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실왜곡과 방송차별의 문제

재판과정 중 일부에 국한된 중계방송이나 편집 등으로 인하여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재판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재판과정의 전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계방송의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만을 방송하게 될 경우 방송관계자에 의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그리고 특히 방송사가 재판중계방송을 주관하는 경우 상업성을 추구하는 특성상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짐으로써 차별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경우 재판중계방송의 요청이 쇄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피고인의 요청이나 동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계방송할 방송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⁵⁾ 아울러, 이러한 사실왜곡과 방송차별의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³⁶⁾

32) 한동섭/김형일, 앞의 논문, 60쪽.

33)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1쪽; 정문식, 앞의 논문, 158쪽.

34)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3쪽; 정문식, 위의 논문, 159쪽.

35)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2-623쪽; 정문식, 위의 논문, 159쪽.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왜곡과 방송차별의 문제는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고안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실왜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다.³⁷⁾ 그리고 방송차별 문제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중계방송의 대상사건을 정하도록 하거나 재판중계방송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입법영역의 국회방송(NATV)이나 행정영역의 KTV 국민방송과 같이 사법영역에서의 법원전문 방송국을 설립하여 이 방송국으로 하여금 재판중계방송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5. 기타

먼저,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소송관계인에 의해 법정외 오용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법정 오용은 법정을 본인의 주장이나 이념을 정당화하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든지, 법정에서 논리적 논쟁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감정적 대립으로 인하여 싸움을 하거나 과시를 하려고 한다든지, 정치인 대상 사건에서 법정의 재판과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본인의 지명도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³⁸⁾ 그러나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현행 법령은 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이들 권한을 행사하여 위에서 거론된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억지·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 오용에 대한 우려 역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중계방송을 위한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소송관계인이나 소송관계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되기도 한다. 즉, 법정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심리적 영향을 받아 그 진술이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요될 수 있고, 법정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으며, 법관을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본인의

36) 김소연, 앞의 논문, 260쪽.

37) 한동섭/김형일, 앞의 논문, 62쪽.

38)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0쪽; 정문식, 앞의 논문, 159쪽.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인지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만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소송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재판중계 방송 및 이를 위한 촬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는 조치, 촬영장비나 촬영하는 모습을 최대한 은폐하는 조치,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정질서를 확보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이 범죄의 발생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즉, 만일 중계방송을 통하여 재판이 공개된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형집행의 종료 후 사회복귀가 더 어렵게 되어 나중에 또다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크고, 재판중계방송을 통해 범죄수법이나 과정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모방범죄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재판중계방송의 주된 목적이나 취지는 범죄예방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범죄수법이나 과정은 비단 재판중계방송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나 기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재판과정의 공개로 인하여 법정 내 피고인의 외모와 죄상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자극하고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를 쉽게 범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오히려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⁴¹⁾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이 범죄발생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은 잠재적 피고인들로 하여금 재판절차에 있어서 범행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결과로 되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자들만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⁴²⁾ 그러나 재판중계방송만으로 이를 시정하는 일반시민이 범행은닉 또는 변명의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여 수립하는 일은 변호인들의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변호인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거나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은 사법에 대한 사회적 감시·감독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즉,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결여된 일반시민은 전문적인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비판을 하는데 그치는

39) 이균용, 앞의 논문, 103-104쪽.

40)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2쪽.

41)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19쪽.

42)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4쪽.

것이 대부분이고, 명백한 이유나 그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법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형사재판 중계방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관의 판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효과만을 초래하리라는 것이다.⁴³⁾ 그러나 사법에 대한 민주적 감시, 감독 및 통제가 반드시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원과 사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부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⁴⁴⁾ 재판중계방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법과 원칙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⁴⁵⁾

IV.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

1. 중계방송의 주체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원으로 하는 방안과 기존 방송사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주체를 법원으로 하는 방안은 법정참석자들의 인격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 소송관계인이나 소송관계자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심적 부담 등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판중계방송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기존 방송사처럼 방송주체의 상업적

43)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25쪽.

44)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원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무려 70.2%에 달했다. 참고로, 위의 조사에서 나타난 최근 수년간 형사사법기관별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한국행정연구원,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346-348쪽; 한국행정연구원,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4, 332-334쪽; 한국행정연구원,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5, 292-294쪽; 한국행정연구원,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306-308쪽).

	법 원				검 찰				경 찰			
	전혀 안 믿음	별로 안 믿음	약간 믿음	매우 믿음	전혀 안 믿음	별로 안 믿음	약간 믿음	매우 믿음	전혀 안 믿음	별로 안 믿음	약간 믿음	매우 믿음
2013년	13.0%	45.9%	38.7%	2.3%	13.7%	47.7%	36.8%	1.8%	11.5%	43.1%	42.6%	2.8%
2014년	17.5%	45.0%	33.8%	3.8%	18.3%	45.7%	32.4%	3.6%	15.7%	44.2%	37.5%	2.6%
2015년	16.6%	48.5%	32.8%	2.2%	16.5%	49.2%	32.2%	2.1%	13.5%	46.4%	37.1%	3.0%
2016년	27.0%	43.2%	27.3%	2.5%	29.1%	43.5%	24.9%	2.5%	20.7%	41.6%	34.1%	3.5%

45)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618쪽; 한동섭/김형일, 앞의 논문, 63쪽.

이익이나 시청률만을 중시한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질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⁴⁶⁾ 이에 비해, 그 주체를 기존 방송사로 하는 방안은 재판중계방송이 국민의 요구에 보다 더 부합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에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비용도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⁴⁷⁾

재판중계방송은 중계방송을 할 재판사건을 결정하는 일(결정),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촬영하고 필요한 경우 편집까지 함으로써 영상을 제작하는 일(제작) 및 위의 영상을 일반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일(송출)을 그 요소로 한다.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우려사항들, 특히 중계방송의 주체를 기존 방송사로 하는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들은 주로 ‘결정’과 ‘제작’의 부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결정’과 ‘제작’은 그 주체를 법원으로 하되, ‘송출’은 기존 방송사에 맡겨도 무방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회방송(NATV)이나 KTV 국민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원방송국을 설립하여 재판중계방송을 전담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⁴⁸⁾ 실제로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는 재판사건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의 방안은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2. 중계방송의 대상사건

어떤 사건을 중계방송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재판중계방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우월한 공공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⁴⁹⁾ 아울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쇄살인사건, 강도강간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에 한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일정 시기의 경과 후에 ‘기업의 부정부패사건,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 등 주요 중대범죄’까지 확대하되,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 관련 절차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다.⁵⁰⁾ 이에 대해서는 연쇄살인이

46) 정문식, 앞의 논문, 163-164쪽; 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4-65쪽; 조규범, 앞의 논문, 237쪽.

47) 정문식, 위의 논문, 163-164쪽; 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7쪽; 조규범, 위의 논문, 236-237쪽.

48) 조규범, 위의 논문, 237쪽.

49) 이균용, 앞의 논문, 101-102쪽.

50) 김재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79-80쪽.

나 강도강간 등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중계 방송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고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보다는 기업의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하급심 단계에서부터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공인과 국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해 더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다.⁵¹⁾

우선, 피고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공공의 이익’⁵²⁾이라는 기준은 추상적·주관적 성질이 다분하여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므로, 그보다 구체적·객관적·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청희망 인원 대비 방청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는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재판중계방송의 기대효과인 공개주의의 확대 실현,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강화 및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신뢰의 제고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판중계방송의 대상사건을 특정 종류의 사건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재판중계방송의 기대효과인 공개주의의 확대 실현,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강화 및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신뢰의 제고가 특정 종류의 사건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성폭력범죄사건이나 강력범죄사건, 심지어 소년사건이라도 구체적 개별사건에서 법원이 재판중계방송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불허하고, 적절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 허용하면 되고, 중계방송을 허용하되 중계방송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촬영 및 방송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⁵³⁾

51) 허중현,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토론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98쪽.

52)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도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고,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중계방송 등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되,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고,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5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이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한에는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제5조 제1항 제5호).

3. 중계방송의 범위와 방법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의 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및 쟁점정리로 이루어지는 ‘모두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및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진술로 이루어지는 ‘사실심리절차’를 거쳐서 ‘판결의 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형사재판의 절차 중 어느 범위까지 중계방송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는 물론이고, 카메라에 대한 의식이나 신경 때문에 법관이 판결문 낭독에 전념할 수 없고 피고인도 판결내용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정숙한 법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의 선고마저도 중계방송이나 촬영 등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⁵⁴⁾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공판기일의 핵심절차라고 할 수 있는 사실심리절차가 종료된 후에 해당 사건의 심리 결과를 공표하는 단계이고, 중계방송이 법관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거의 없으며,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만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피고인 등 다른 법정참석자들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계방송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⁵⁵⁾ 더구나, 심리와 달리 판결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9조⁵⁶⁾의 취지에 비춰 볼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마땅히 중계방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를 포함한 공판기일의 모든 절차가 중계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형사재판의 전부를 중계방송의 범위로 삼는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발췌나 편집 보도 혹은 방송을 통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⁵⁷⁾ 공개주의의 확대 실현,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강화 및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신뢰의 제고라는 재판중계방송의 기대효과와 최대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형사재판의 전부를 중계방송의 범위로 삼을 경우에는 소송관계인, 소송관계자 및 기타 법정참석자들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들에 대한 침해 등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길 가능성과 그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촬영하거나 중계방송할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및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조치나

54) 이균용, 앞의 논문, 106-108쪽.

55) 같은 견해로, 정문식, 앞의 논문, 164쪽.

56)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조규범, 앞의 논문, 237쪽.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촬영은 촬영기사로 하여금 카메라를 휴대한 채 이동하면서 혹은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가면서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소형 카메라를 법정의 벽면에 고정시켜 촬영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 방식은 소송관계인이나 소송 관여자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촬영하고 중계방송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재판부가 법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⁵⁸⁾ 그리고 그 카메라를 법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여 촬영하도록 하면, 촬영 및 방송 장면은 재판부는 정면,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로 측면(종종 뒷면이나 정면), 증인과 방청객은 뒷면이 되므로, 소송관계인, 소송관여자 및 기타 법정참석자들의 인격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방식은 재판의 직접공개 내지 법정방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돌발적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 특히 소송관계인이나 소송관여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불리하다는 점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⁵⁹⁾ 이렇게 형사재판을 생중계로 방송하기보다는 수십 분간의 시차를 두고 방송하는 지연중계방송의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⁶⁰⁾ 지연중계방송은 생중계와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차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부분의 삭제,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 음성이나 영상의 변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생중계 방식의 단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⁶¹⁾ 아울러, 편집 등을 통한 재판내용의 왜곡을 방지 또는 시정하고 소송관계인과 소송당사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고 정직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원은 촬영 영상 전체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것이다.⁶²⁾

58) 같은 견해로, 한동섭/김형일, 앞의 논문, 65쪽.

59) 정문식, 앞의 논문, 164-165쪽; 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5-66쪽.

60)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터넷을 통해 30분 정도의 지연중계방송으로 재판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6쪽, 각주 51).

61) 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6쪽.

62) 한동섭/김형일, 위의 논문, 66-67쪽.

V. 맺음말

앞에서 검토한 바에 의할 때,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주의나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은 헌법상 어떤 권리나 원칙의 구성요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법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적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법적·실제적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위의 우려들 중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필요는 있다. 한편,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방청석이 만석이거나 방청희망자에 비해 부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주로 일반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시간대인 평일 주간에 이루어져서 법정에 참석하여 방청하는 게 쉽지 않고, 전체 재판사건 중 일반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도 적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어떤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중계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07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사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판의 공개는 조금 더 확대된 바 있다.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확대는 이를 훨씬 초월하는 규모의 재판공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서, 공개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확대의 이면에는 피해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때에는 그 이익적 측면과 피해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검토를 통해서 이익적 측면을 최대화하면서 피해적 측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 한국행정연구원,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_____,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5.
- _____,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4.
- _____,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 학술지

- 강동욱,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0, 215-232쪽.
- _____,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613-629쪽.
- 계인국,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139-167쪽.
- 김배원,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30쪽.
- 김소연,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45-280쪽.
- 김재운,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297-332쪽.
- 노재선,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9-152쪽.
- 송희진, “형사재판에서의 공개주의”,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 연세법학연구회, 2000, 113-129쪽.
- 이균용, “법정에서의 사진촬영 · 녹음 · 방송 : 법원조직법 제59조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 에 관한 시론”, 법조 제48권 제2호, 법조협회, 1999, 82-115쪽.
-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07-381쪽.
- 정문식, “재판방송의 헌법적 문제와 가능성 : 재판방송의 헌법적 정당성과 허용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43-170쪽.
- 조규범,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13, 213-242쪽.
- 한동섭/김형일, “재판중계의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한양논총 제31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3-72쪽.

3. 세미나 자료집

- 강동욱,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발제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15-36쪽.
- 김재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발제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65-83쪽.
- 허중혁,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토론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95-100쪽.

[Abstract]

A Study on Criminal Trial Broadcasting

Kim, Dae-Seong*

The current law in Korea allows criminal trial broadcasting restrictively while national attention to it goes hig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dmissibility, range, methods, and procedure of criminal trial broadcast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what relationship does trial broadcasting have with right to public trial, principle of public trial and right to know, and examine various concerns about criminal trial broadcasting. Trial broadcasting is not required by right to public trial, principle of public trial and right to know, but can just be a useful way to realize them. And the various concerns about criminal trial broadcasting can not be grounds for overall prohibition of criminal trial broadcasting because they have not validity and can be settled by taking some legal and practical action. Finally, this suggests a specific plan for criminal trial broadcasting.

[Key Words] Criminal trial broadcasting, Right to public trial, Principle of public trial, Right to know, Judicial trus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nd Security, Seonam University